

연구과제 보고서

훈 련 자 인 적 사 항 훈 련 내 역	훈련과정	학위	훈련기관	University of North Texas
	성 명	김미영	파견연도	'22.7.~'24.7.
	훈련과제	공공미술정책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보고 주제 (제목)	공공미술 사례연구를 통한 서울시의 공공미술정책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도시마다 시민들의 문화 생활권을 보장하고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미술작품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공공미술은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창조적 표현을 포함한다. 기념비에서부터 현대 설치물과 공연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의도 역시 다양하다. 공공미술이 정의는 다양한데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예술을 시민 대화를 활성화 하거나 커뮤니티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최근의 공공미술은 도시나 지역의 특성보다는 단순히 설치에만 치중함에 따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주민들의 동의없이 설치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로 빈번하다. 도시 환경의 미적 가치를 제고하거나 시민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시각적 공해를 발생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유지비용 발생 등 관련 예산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공공미술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미국 등 해외 공공미술 사례를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미술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한다.

2. 공공미술의 개념 및 현황

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의 개념은 시대적 또는 장소적 상황에 따라 여전히 논쟁을 거쳐왔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쉽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흔히들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 (Art in the Public Places)”라고 한다. 이것은 공공장소에 놓이는 미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이라고 해석할 있다.¹⁾

또한 “공공미술은 공권력이 후원하는 미술, 공공장소에 위치하는 미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술,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미술, 공공이 제작한 미술 등 ‘공공성(publicness)’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설명”된다(김세훈 외, 2008).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은 “공공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박삼철 역, 2000), 19세기까지 전쟁의 승전, 국가의 번영,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념물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도시의 발전과 함께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세기 후반부터는 관람자와 직접 소통하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²⁾

〈 국가별 공공미술의 개념³⁾ 〉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이라고 하여 영구적으로 공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동 가능한(Portable) 혹은 임시(Temporary) 공공미술까지 기존의 장르별 구별이 아닌 다른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임 - 근래 미국의 주나 시에서 제시하는 공공미술의 범주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작품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조형예술작품에 한정되지 않고 퍼포먼스를 포함한 예술 전반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고서 1997, p 7

2) 정철현, 안경화,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미술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1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9, p.103-104

구분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밴쿠버 시의 경우, 공공미술에 활용될 수 있는 작품으로 예술가의 창작품 또는 협업 작품이라는 방식으로 한정함. 여기에 장르로는 설치, 조각, 도자기, 유리, 필름, 비디오, 패브릭, 엔지니어링, 건축, 회화, 환경, 조경, 사진 등으로 규정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경우, 공공장소, 건축물의 일부 등으로 영구적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각예술로 조각, 조명, 스트리트퍼니처, 도로, 레일, 간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각 지역별로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며, 근래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영국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실천이나 프로세스를 모두 공공미술로 보기 때문에,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함 - 현재 영국에서 이해하는 공공미술은 작품이라는 결과물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세스 기반의 예술적 실천의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작품들에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초기의 공공미술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공기관에 혹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치되는 작품만을 공공미술로 한정했으나, 기금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기금으로 구입된 작품을 대관하여 설치하는 방식은 물론, 현재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까지 확대 - 1% 법에 의해 구매 또는 주문가능한 공공미술은 드로잉, 회화, 조각, 석판화,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조명 설치 등 지금까지 조형예술작품은 물론, 기록물이나 신기술이 사용된 예술에까지 적용됨. 또는 이러한 공공미술로 1%법에 의해 설치 혹은 주문 제작된 작품은 모두 저작권법에 적용됨

〈 미국 공공미술의 변화, 정철현 외, 2011 〉

시 기	내용	작품유형
1930년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예술가를 고용하여 벽화, 공공조각, 다큐멘터리 사진 등 의뢰하는 것에서 시작됨	
1960년대	1963년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의 ‘건축 속의 예술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건물 신축 시 건축비의 0.5%를 공공미술에 할애하도록 규정함	
1970년대	19687년 NEA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으로 지자체나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부 지원,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활성화	<p>Alexander Calder, LaGrande Vitesse, 1967</p>
1980년대	지방자치단체별로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제정, 도시계획에 미술가가 참여하는 공공미술 도시디자인이 되는 ‘도시계획 속의 미술’ 시행	 <p>Nancy Holt, Da가 Star Park, Rosslyn, Virginia 1979-1984</p>
1990년대 이후	1970년대 미국 주민변화운동과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공공영역에서 작가와 관객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등장	 <p>Suzanne Lacy, Crystal Ault, 1985-1977</p>

2) 서울시의 공공미술정책 현황

서울시는 창의적인 공공미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해 서울의 예술적 자산과 정체성 형성,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이는 2006년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미술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전반(작품설치 장소, 콘셉트, 방법, 작품안 선정 등)에 대해 심의, 자문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3기까지 구성 운영하였다. 신규작품 설치 중단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2012년 4월 폐지가 되었다.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은 서울문화재단 소속 도시갤러리추진단(’07~’08년)에서 실행하였으며, 이후 서울디자인재단(’09~2013년)이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의해 설치된 작품 현재 존치하고 있는 39점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

〈 추진실적: 총 85개 프로젝트 제작 및 설치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프 로젝트 (존치프로젝트)	85 (43)	30 (18)	28 (10)	20 (9)	4 (4)	3 (2)
집 행 액	13,887	3,987	4,970	3,502	958	470

도시갤러리 존치 중인 총 39점은 전문가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갤러리를 포함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등 약 4,455점을 공공미술작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 건축물미술작품이 4,158점, 공공미술작품이 297점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21.8.31. 기준)

합 계	공공미술작품(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관리작품)					건축물미술작품 (건축주 관리작품)
	소 계	동상	기념비	조형물		
				도시갤러리	기타	
4,455	297 (195)	48 (31)	71 (49)	39 (39)	139 (76)	4,158

〈 도시갤러리 존치 작품 39점 현황 〉

연번	설치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작품명	위치
1	2006		Oldenberg Bruggen	SPRING	종로구 청계광장 입구
2	2007		소설브레인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종로구 청운동 청운공원
3	2007		윤영석	일획을 긋다	종로구 인사동길 복인사마당
4	2007		최옥	무제 (서울역사박물관 아트쉘터)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5	2007		조나단 브롭스키	해머링맨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정류장(홍국생명 앞)
6	2007		하태석	FLOW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정류장(홍국생명 앞)
7	2007		메카누	시간은 강처럼 흐른다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정류장(홍국생명 앞)
8	2007		김남훈	투명변조기	종로구 사직동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9	2007		배영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말	종로구 서울농학교
10	2007		배영환	점자, 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종로구 서울맹학교
11	2007		최병훈	Zari0801	중구 덕수궁 돌담길
12	2007		최병훈	Zari0802~Zari0803	중구 덕수궁 돌담길

연번	설치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작품명	위치
13	2007		최병훈	Zari0804~Zari0805	중구 덕수궁 돌담길
14	2007		최병훈	Zari0806~Zari0807	중구 덕수궁 돌담길
15	2007		양주혜	Bar code 빛의 문	성동구 옥수역 출구
16	2007		이상진	화분(1~29)	성동구 옥수역 승강장
17	2007		고낙범	스트라이프: 속도	성동구 옥수역 승강장
18	2007		원인종	먼곳에서 오는 바람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공원
19	2007		정보원	Transparence 투명함	성동구 하수도과학관
20	2007		김광수	색동벽 사이로	마포구 성산동 중동초등학교
21	2008		김일용	자연연상	마포구 상암동 평화공원
22	2008		임옥상	하늘을 담는 그릇- 희망전망대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23	2008		이대일	느티나무형제-마루공원	서초구 엽곡동
24	2008		김월식	북두팔성	종로구 정독도서관

연번	설치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작품명	위치
25	2008		정연택	꿈꾸는 피아노	강북구 수유동 인수초등학교
26	2009		김석	일어서자 초인상 (서울, 황금알을 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27	2009		박현진	하늘 아래 첫 동네	관악구 신림동 난곡공원
28	2009		왕광현	서울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러브레터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공원
29	2009		안규철	바람의 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30	2010		안병철	삶/소통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
31	2010		박충흠	산-하늘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32	2010		서호성	풍물+류를 더하다	종로구 안국역
33	2010		김신희 외 249명	생명의 벽	강남구 대치동 메디슨사옥
34	2011		최순용	회화적 몽타주	용산구 남산도서관 정류장 (남산소월길 정류장)
35	2011		주동진	남산의 생태	용산구 후암약수터 정류장 (남산소월길 정류장)
36	2011		김재영	휴식	용산구 보성여중고 정류장 (남산소월길 정류장)

연번	설치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작품명	위치
37	2011		김현근, 스카타고	쉽표, 또다른 여정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류장 (남산소월길 정류장)
38	2011		장수정	뮤지엄아트버스쉘터 (쉘터오브메모리즈)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정류장
39	2011		장수정	뮤지엄아트버스쉘터 (쉘터오브메모리즈)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건너편 정류장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종료 이후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 11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미술위원회’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다.

특히 공공미술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공공미술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작품대상은 서울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요지 내 30일 이상 전시·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이며, 특히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용지와 설치기간과 상관없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공공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은 미술관’사업을 통해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공공미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미술작품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및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경우는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축물미술작품의 경우,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연혁 〉

연도	내용
1979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연도	내용
	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1995년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가 의무로 개정, 1만 m^2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의무화 됨
2000년	- 건축물 장식비용을 건축비의 1%에서 1% 이하로 낮춤, 이후 시행령에 미술장식비용을 0.7%(특별시 및 광역시·도)로 정함
2001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 출연제' 도입 -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하여 예술성을 강조 -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 특히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설치금액의 70%만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이 가능

다만, 서울시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속된 민원발생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외부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7.11.)을 통해 공공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위원수를 80명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다.

기존 매 회의시 13명 이내 위원으로 운번제로 운영하던 것을 전체 위원을 고정제로 변경하여 심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0년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1년 3회 연임을 1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였다.

〈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례제정 전후 비교 〉

구 분	조례 제정 전	조례 제정 후('17.11.19.)	현행(일부개정, '21.4.5.)
위원구성	80명 이내 매 심의 시 13명(운번제)	20명 이내 매 심의 시 과반	30명 이내 매 심의 시 과반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최대 4년)	1년, 3회 연임가능 (최대 4년)	1년, 1회 연임가능 (최대 2년)
위원모집	공개모집	추천	공개모집, 추천 병행
작가발표	없음	없음	부여
심의신청	건축물 준공 전	건축물 허가 시	건축물 착공신고 시

3. 국외 공공미술 사례연구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예술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심지어 강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다. 건축 환경에 공공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규정은 1936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51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미국은 건설비용에서 공공예술에 할당된 비중은 0.25%에서 1.25% 사이지만 일반적으로 약 1%에 달한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문화정책의 범위 내에서 공공 예술 작품을 수행한다. 바로셀로나, 더블린, 시카고 등의 도시는 이러한 도시 중 하나이다. 이 도시의 공공 예술은 전략적 문화 계획, 공공 예술 계획 및 기타 행정 규정을 통해 계획된 방식으로 실현된다.

1) 미국-시카고

1980년대 이후, 시카고에서는 문화 주도의 전략과 정책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역 차원의 문화정책 외에도 이 도시는

매 시대마다 인종적 다양성과 이민 흐름이 창조적 계층의 매력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이 도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도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시카고 피카소는 도시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며 많은 공공 예술작품이 도시를 더욱더 매력있는 도시로 창조해가고 있다. 현재도 시카고는 '공공 예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각품인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가 오늘날 시카고 도시의 상징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이 예술단체나 박물관에 재정적 지원을 많이하는 반면에 공공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 예술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은 공공 예술 기금의 주요 원천이다.

한편, 수년동안 기부금과 민간단체를 통해 공공 예술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법적 설치 비율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카고에서도 의무적이다.



The Cloud Gate, Anish Kapoor



Flamingo Sculpture,
Alexander Calder

그러나 예술에 대한 백분율은 시카고가 1.33%로 전국보다 높다. 이는 시카고시에서 도시 전역의 공공예술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문화 계획(the Chicago Cultural Plan, 1986), 시카고 문화 계획(2012), 시카고 공공 예술 계획(the Chicago Public Art Plan, 2017) 및 조례에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퍼센트 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첫 번째 작품은 도시의 상징 중 하나인 알렉산더

칼더의 플라밍고 작품이다. 시카고에서 예술 정책에 대한 비율이 채택된 이래로 150개 이상의 공공장소에서 500개 이상의 예술 작품이 도시 컬렉션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발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카고의 경우 채택된 정책과 전략이 문화 경제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부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텍사스

텍사스 주의 경우는 예술위원회(Texas Commission on the Arts)를 통해 경제개발, 예술교육, 문화관광 및 예술가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텍사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예술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텍사스예술위원회는 1965년 텍사스 입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텍사스 정부법 444.029절에 따라 \$250,000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정치적 하위 기관은 건설 프로젝트 비용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을 건설 프로젝트 현장 또는 인근의 미술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지정한다.

이러한 비율 결정은 텍사스 예술위원회와 상의할 수 있다. 텍사스 예술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RFQ(Request for Quote), RFR(REquest for Proposal) 방식으로 예술가를 모집하며, 프로젝트의 범위를 지정하고 프로젝트의 과정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 및 보존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주요 도시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틴시는 건설 프로젝트에 예산의 2%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커미션 또는 예술품 구매에 할당된다. 오스틴의 공공미술 컬렉션은 공항, 컨벤션 센터, 도서관,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매년 평균 8~1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스틴 시는 조례를 통해 Art in Public Places (AIPP)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AIPP 패널은 공공예술 추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예술위원회에서 임명한 자원 봉사 시각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상임위원회로, 정기적인 월간 회의 외에 전시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청회 및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패널들은 현대 시각예술, 공공 예술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한다.



댈러스의 경우는 예술문화국(the City of Dallas of Arts and Culture)은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예술 프로그램은 2015년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음. 1989년 시작된 달라스의 'Percent for Art' 프로그램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에서 자본 개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매 적격 자본 개선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1.5%가 자본개선 부지 또는 그 인근 위치에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된다. 예술 문화 사무소를 통해 예술가 모집이 진행되며, 제출된 예술가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정 패널이 구성되며, 패널은 작품이 위치할 지역의 대표, 예술가 또는 디자인 전문가, 프로젝트 설계자 또는 엔지니어, 달라스 시 프로젝트 관리자 및 공공 예술 프로그램 직원으로 구성된다. 아티스트 적격 후보를 검토한 후 패널은 검토할 권장 사항을 공공 예술위원회에 전달하여 선정한다. 작품 선정 검토 기준은 디자인 품질, 입지 적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안전성 등이 고려된다.

3) 미국-루이스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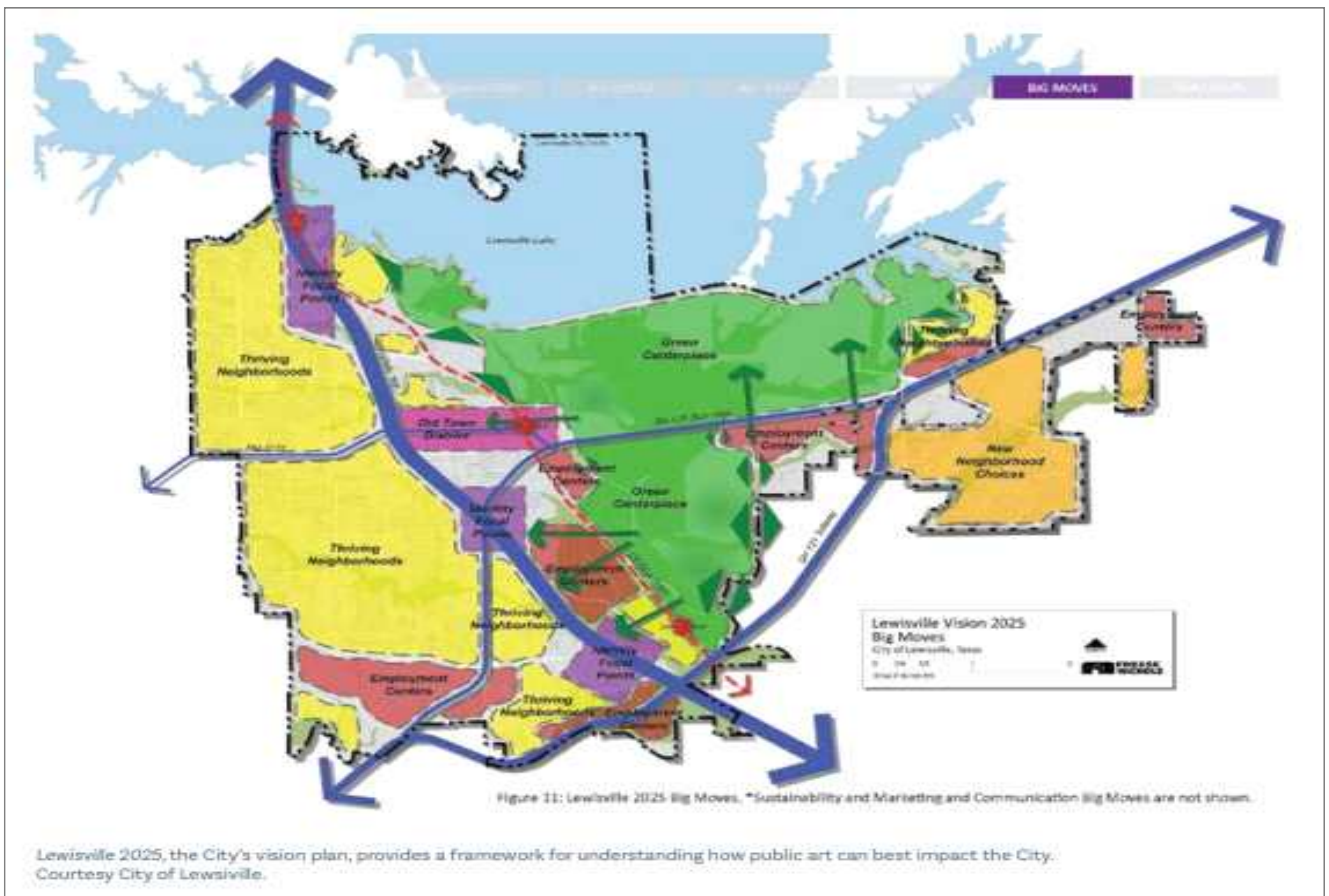
루이스빌(Lewisville)은 댈러스 포트워스의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댈러스와 덴트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루이스빌은 중앙도서관, MCL 그랜드아트 센터 등 3개의 시민문화시설 건설과 루이스빌 2025 비전 계획 수립과 함께 루이스빌 공공예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16년 3월, 루이스빌시는 새로운 공공 예술 위원회(Public art commissions)를 토대로 마련한 공공예술 정책(Policy)과 지침(Directive)을 마련하였다. 지침은 공공 미술 계획(the public art initiative)을 위한 목표, 정의 및 자금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의 목적, 권한, 절차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하고 퍼블릭 아트 마스터 플랜은 정책과 지침을 담고 있으며 루이스빌 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스터플랜은 2017년에 수립되었으며, 계획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성공적인 도시로서 루이스빌의 미래에 공공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새로운 민간 개발의 일부로 공공 예술을 장려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과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루이스빌은 2025 비전계획 및 기타 도시개발계획과의 일관성 실행 가능성, 잠재적 지역사회 영향,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역별 도시개발 방향성 및 일정, 규모 등을 우선 분석하고, 개발 이후 지역에 맞는 공공예술작품 설치 작품의 컨셉 및 작품을 선정한다. 그와 동시에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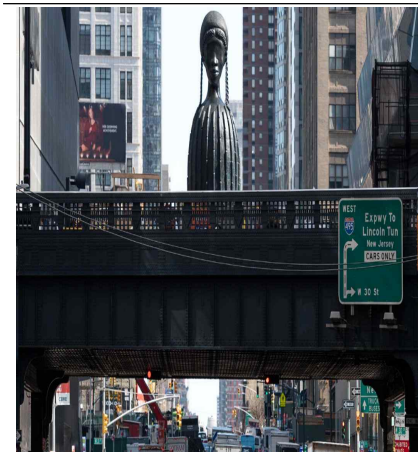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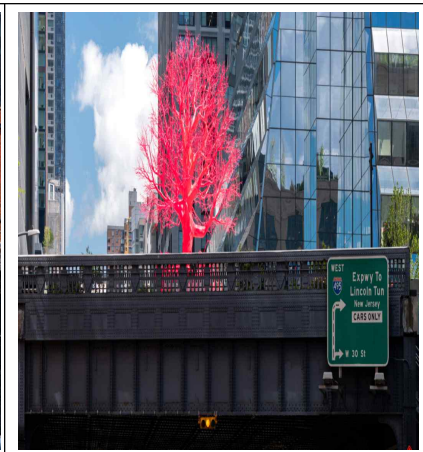
〈 루이스빌 도시개발계획 2025년과 연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빅 무브) 사이트 〉



4) 미국-뉴욕의 하이라인아트

하이라인은 뉴욕 맨하탄의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고가 화물철도 자리를 공공 공원으로 조성했다. 하이라인은 뉴욕시 소유이며, 비영리단체(Friends of the High Line)에서 공원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1999년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Friends of the High Line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철거의 위협에 처했을 때 하이라인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하이라인이 모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공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NYC Parks와 협력하는 비영리 보존 단체이다.

High Line Art는 공공 장소에서 현대 미술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하이 라인과 그 주변에서 세계적 수준의 예술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제작, 설치한다. 하이 라인의 공공미술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대중에 공개된다. 하이라인아트는 부분적으로 뉴욕주와 뉴욕주의회의 지원을 받는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p>Simone Leigh's Brick House 2019.~2021.</p>	<p>Sam Durant's Untitled(drone) 2021.~2022.</p>	<p>Pamela Rosenkranz's Old Tree 2023.~2024.</p>

5) 스페인-바로셀로나

1980년대와 1990년대, 특히 1992년 올림픽 덕분에 도시 디자인과 도시 관리 분야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바로셀로나 모델의 출현을 뒷받침했다. 바로셀로나는 문화 주도의 도시 재생, 창조 산업 및 문화경제 발전 측면에서 유럽 대륙의 기준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바로셀로나의 문화주도 재생은 1990년대 이래로 고도로 발달된 전략과 비전과 일련의 공간 계획을 통해

도시 개발을 이끌어왔다. 1999년 처음으로 영국왕립 건축가 협회(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도시는 바로셀로나였다.

도시 디자인과 문화 경영의 성공으로 두드러진 바로셀로나에서 공공예술은 올림픽 이후 도시 문화정책의 일부였고, 이후 공공 공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도시의 해안 지역에서 많은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졌다 도시의 중요한 문화 구역 중 하나인 바로셀로네타 있는 레베카 혼의 작품이 좋은 예이다.

바로셀로나 헤드 조각상과 미스토스 조각품은 1992년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많은 조각품 중 하나이다. 도시의 문화정책은 1996년에 자치 기관으로 설립된 바로셀로나 문화연구소(Barcelona Cultural Institute)에 의해 추진된다. 이 기관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련된 모든 문화 전략 계획을 조정한다.



L'Estel Ferit Sculpture,
Rebecca Horn



The Mistos Sculpture,
Claes Oldenburg and Cossje van Bruggen

전략계획은 각 영역의 미래 니즈를 파악하고 연구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연구소는 지방정부, 비영리 민간 기관 및 문화 이해 관계자 간의 연결 고리를 설정한다.

바로셀로나는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바로셀로나에서는 예술 및 문화기관은 개인 보조금, 민간 및 공공 협력 및 정부 지원, 유럽 연합의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조직과 프로젝트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공예술의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 인 예술정책에 대한 퍼센트는 스페인 전역에 적용되며, 지방정부는 사업 시행에 많은 자율성을 가진다. 각 프로젝트는 별도로 평가되며,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철차는 없다. 바로셀로나에서 공공예술의 성공은 공공예술이 올림픽 이후

계획된 도시 거버넌스 전략의 요소였던 문화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전략은 공공예술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 절차에 대한 명확한 비율은 없지만 바로셀로나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결합한 도시 중 좋은 사례로 뽑힌다.

6) 아일랜드-더블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더블린은 북유럽의 다른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탈산업화로 인해 제조업이 도심을 포기한 경제 구조 조정의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영향을 받았다. 도심의 사회적 조건의 악화는 물리적 악화를 동반하였고, 1990년대에 성공적인 경제 재생 정책은 도시 중심으로서의 복귀를 장려하여 인구와 역사적 중심지의 활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오늘날 더블린의 중요한 문화지구인 템프 바(Temple Bar)와 같은 복원된 유적지의 존재로 인해 중요한 문화 주도 재생 프로젝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블린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술 프로젝트에 지방 정부의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지역 차원에서 문화 정책은 반영은 예술법, 아일랜드 예술위원회 및 예술계획과 같은 장치를 통해 실행된다.

더블린의 공공예술 자금 조달은 위한 중요한 방법인 예술에 대한 비율은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전략에 의해 많은 작품이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전략은 중앙 정부가 결정한 틀에 따라 더블린에서 시행되며, 비율은 건설 비용의 1%로 결정되지만 아래 표에 표시된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건설비용이 49,000,000유로에 도달하면 예술품의 비율은 49,000 유로 대신 35,000유로가 된다. 그러나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출처의 자금도 사용된다. 중앙 행정부의 문화정책은 더블린 시의 공공미술 실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7) 터키-이즈미르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는 8000년의 역사적 과거를 가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과 같은 많은 고대 문명의 요람이다. 17세기부터 무역 개선의 영향으로 다양한 민족(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터키인)이 함께 살아온 도시로 뿌리 깊은 역사 덕분에 이즈미르는 특히 20년 동안 문화정책 개발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09년에 개최된 이즈미르 문화 워크숍을 통해 도시의 문화 연구가 시작되었고 공공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후 몇 년 동안 문화 연구와 관련된 몇가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중 2011년 이즈미르 디자인 포럼, 2012년 이즈미르 문화 경제 개요서 준비, 2012년부터 개최된 조각 및 벽화 워크숍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티셔티브는 2014년에 시작된 이즈미르 역사 프로젝트(Izmir History Project)의 안내에 따라 케메랄티와 그 주변을 포함한 도시의 역사적 핵심은 도시 문화 구역으로 계획되었다. 이즈미르의 공공예술은 대학,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중 이해 관계자 문화 연구의 여러 단계의 일부이다.

그러자 지방 정부는 공공 예술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주최하는 조각 및 벽화 워크숍은 최신 공공 예술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케메랄티 지구에 위치한 이즈미르 시계탑으로, 도시의 상징이다 가장 오래된 기념물로 인정받고 있다.

TABLE 1 THE PERCENT FOR ART RATES IMPLEMENTED IN DUBLIN*

Project cost band	Percent for art rate	Maximum limit
€ 0 – € 5,000,000	1%	€ 50,000
€ 5,000,000 – € 20,000,000	1%	€ 125,000
€ 20,000,000 – € 50,000,000	1%	€ 350,000
€ 50,000,000 +	1%	€ 500,000

* The Department of Tourism, Culture, Arts, Gaeltacht, Sport and Media, 2020

재정 측면에서 이즈미르의 공공예술은 지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모든 공공투자와 마찬가지로 공공 예술에 대한 투자는 공공 조달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기부금과 보조금은 공공미술은 직접 지원하지 않고 공공미술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공공예산으로 이관되며, 터키에 대한 공공투자는 단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공공미술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건설투자로 간주된다. 이 방법을 통해 전체 투자목록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즈미르에서 공공 예술의 건설, 설계, 유지보수 및 관리 범주에서 14건의 투자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14개의 예술작품은 건설 투자 범주에 나열되어 있찌만 목록은 조각품, 기념물 및 벽화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워크숍과 대회는 공공예술의 제작 과정을 지원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추진되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퍼센트는 건축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장소에 예술 작품을 통합하여 보다 매력적이고 유용하며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다양한 해외 도시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수 있듯이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공공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다. 이 전략은 문화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공간에서 예술 전략에 대한 비율은 도시 환경과 시민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술 들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더 작은 지역에서 공공예술을 보장할 수 있다.

4. 공공미술 관련 법령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중심으로)

1) 해외 공공미술 관련 법령

미국의 경우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Art in ARchitecture’ 관련 조항이 있으나 중앙 정부 규정 이외에도 주에서 관련 조례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하와이, 뉴욕, 워싱턴, 뉴욕, 등)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 미국 25개 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조례 〉

지역	관련 법령
알래스카	Title 35, Chapter 35.27 〈Art works in public Buildings and Facilites〉
콜로라도	Title 21, Other Agencies, Article 48.5, Part 3, §24-48.5-312 〈Art in Public Places Program〉

지역	관련 법령
코네티컷	Title 4b, Chapter 60, Section 4b-53. 〈Allocation of Bond Proceeds for Art Work in Construction or Remodeling of State Buildings〉
플로리다	Title, XVIII, Chapter 255, Section 225.043. 〈Art in State Buildings〉
하와이	Title 1, Part III. 〈Art in Public Places and Relocatable Works of Art Programs and State Art Museum〉
일리노이	Chapter 20, 20 ILCS 3105/14.
루이지애나	Title 25, RS 25:900.1. 〈Percent for Art Program; Established; Implementation〉
메인	Title 27, Chapter 16. 〈The Percent for Art Act〉
메릴랜드	Title 4, Subtitle 6, 〈Maryland Public Art Initiative Program〉
미네소타	Chapter 16B, Section 16B.35. 〈Art In State Buildings〉
미시시피	Chapter 11, §39-11-13. 〈Building Fund for the Arts〉
몬타나	Chapter 2, Part 4. 〈Art for State Buildings〉
네브라스카	Chapter 82, Sections 82-317.부터 82-329.까지
뉴 햄프셔	Title 1, Chapter 19-A, Sections 19-A:8.부터 19-A:12.까지
뉴 저지	Title 52, Chapter 16A, 52:16A-29.부터 52:16A-34.까지 〈Public Buildings Arts Inclusion Act〉

지역	관련 법령
뉴멕시코	Chapter 13, Article 4A. <Art in Public Places>
뉴욕	New York Laws Arts and Cultural Affairs(ACA), Title B, Article 5
오하이오	Ohio Revised Code Title 33, Chapter 3379, Section 3379.10. <Percent for Arts Program>
오클라호마	Oklahoma Statutes Title 74, §74-9030.2.부터 §74-9030.7.까지 <Oklahoma Art in Public Places Act>
오래곤	Oregon Revised Statutes Volume 07, Chapter 276, Section 276.073.부터 Section 276.090.까지
유타	Utah Code Title 9, Chapter 6, Part 4. <Utah Percent-for-Art Act>
버몬트	ermont Statutes Title 29, Chapter 2. <Art In State Buildings
워싱턴	Revised Code of Washington Title 43, Chapter 43.46.090. <Acquisition of works of art for public buildings and lands>
위스콘신	Wisconsin Statutes & Annotations 41, Subchapter IV, 41-57. <Fine Arts in State Buildings>
와이오밍	Wyoming Code Title 16, Chapter 6, Article 8. <Works of Art in Public Buildings>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건축 속의 미술은 정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AIA)”이 프로젝트가 적용되었다. 연방 관리 규정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 공공미술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컨대,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부터 예산, 절차 등에 대한 방식은 각기 다르다.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의 공공미술작품 심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이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며, 미술에 조례가 깊지 않은 일반인들도 선정될 수 있다. 또한 미술 전공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학자, 관광 전문가 등도 참여 가능하며, 건축자가 최종 작품 선정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 각 도시별로 공공미술작품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지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도시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경우 예술 컬렉션을 관리하고, 워싱턴주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워싱턴 주 예술위원회(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ArtsWA)가 있다. 작품설치 및 유지보존, 변경, 처분 활용 등 단계별 공공미술 관리지침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워싱턴 주의 예방 보존 지침은 총 1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 미국 워싱턴 주의 미술작품 예방 보존 지침⁴⁾ 〉

구분	번호	단계	내용
기획 단계	1	재료와 제조 핸드북 (Materials and Fabrication Handb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에게 오래가는 재료와 선호되거나 필수적인 제조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보존가와의 협의를 통해 재료 연구, 제조경험 등을 기반으로 작가들에게 공공 환경에서 작품이 겪는 특정한 환경에 대해 알리고 작가가 적절한 재료, 디자인, 제조, 설치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
	2	보존 관련 컨설팅 검토 (Conservation Consultation and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는 ArtsWA 직원에 의해 선택된 보존가(전문기술가)와 함께 작품 재료, 배치, 제작, 작품 설치의 가역성과 향후 유지, 보수, 작품의 수명주기에 대해서 평가 받고 상담받는 것이 필수 조건임
	3	보존 관련 컨설팅 (Conservation Consul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은 작품 초기의 컨셉과 디자인 단계에 일어남 - 보존 전문가는 작가와의 상담을

구분	번호	단계	내용
			서면으로 요약, 결정을 문서화 및 공유 - ArtsWA는 보존 2010년부터 이 과정을 필수적인 것으로 이행함
	4	보존 검토 (Conservation review)	-ArtsWA는 작가의 최종 프로포절 초안에 대해 형식적인 평가를 필수로 함
계약 단계	5	취득 계약 및 과업의 범위 (Acquisition Contract Scopes of Work)	- ArtsWA는 과업의 범위를 제안단계와 보존 상담을 검토하고 결정된 재료, 제작, 배치, 설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계약에 상세하게 지정함
	6	작품 하자보수 기간 (Extended Artwork Warranty Periods)	- 작품의 표준 하자보수 c ordlarlrks 지정은 2008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설치 단계	7	작품 액자 (Framing)	- 새로운 작품의 액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핸드북에 포함 - ArtsWA 직원이 검토 후 관리 감독됨
	8	보안 설치 방법 (Security Installation methods)	- 장소 이전했을 경우 미술작품의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함
정보 기입 단계	9	미술작품 식별 (Artwork Identification)	- 작품의 정보와 접근 번호 기재
	10	안내판 설치 (Plaques with artist's statement)	- 작품은 작가의 의견이 반영된 안내판이 포함되어야 함
문서화 단계	11	최종 프로젝트 문서화 (Final Project Documentation)	- 작가는 작품에 대한 장기적 의도, 정보(필요한 재료 및 재료샘플), 제조, 설치(해체) 등을 적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함
	12	연락처 유지 (Agency-level inventory contacts)	- 관리 에이전시와의 연락체계 유지

4)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Art care: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for Washington's satate Art collection>, 2013 / 한국문화미술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개선 연구, 2014-06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민간기구(샌프란시스코화상협회)와 공동으로 시 소유 미술작품 보존관리 재단을 설치하고 시는 전체 예산 중 5%를 매년 전 소장품을 유지보존 및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공미술 선도도시인 시카고 역시 밀레니엄 파크의 경우 작품 예산의 50%를 광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미술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공공미술 활용에 대한 노력으로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p>워싱턴 주 모바일 앱</p>	<p>샌프란시스코 아트케어</p>	<p>시카고 밀레니엄 파크</p>

2) 국내 공공미술 관련 법령

우리나라는 “일정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미술작품에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22조”를 근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2년에 법이 제정되어,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권장되었다가 95년에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로 개정되었다.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용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작품가액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용의 0.1~1%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1%, 공동주택 외 0.5%~0.7%, 공동주택 0.1%의 비율이 적용된다.

작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작품심의 시기는 착공 신고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기준은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성, 유지·보존 및 구조적 안전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법률 개정('22. 7월)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술작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주(소유자)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작품의 다양한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장 등에게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자료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공모방식은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원상회복 조치는 이미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행정지도 중이나 벌칙조항 등 강제적 수단이 없어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만 철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철거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철거요청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 ----- ----- 금액을 사용하여 -----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
-----.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공공미술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공공미술 작품 설치하는 도시의 경관개선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한다. 대부분의 해외 도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퍼세트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예술작품을 함께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설치에 대한 방식 및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치기금, 위원회 운영방식, 설치보존 및 유지관리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사항은 작품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동상, 기념비, 조형물, 도시갤러리, 건축물 미술작품 등 약 4,555점으로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 관리, 철거, 활용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전략이 부재하다. 미국 워싱턴 주의 유지 보존 지침과 같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보수, 활용, 철거 등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술작품의 보존주기(생애주기)에 대한 규정 미비로 유지보수 및 철거 등에 대한 기준이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워싱턴 주와 같이 작품설치에서 철거까지 단계별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세부지침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현재 4,555개의 공공미술작품이 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의 문화예술자원으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는 공공미술작품이 하나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도시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으나, 서울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함께 오늘날 공공미술은 작품설치 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또는 일시적인 작품을 포함하여, 퍼포먼스, 축제 등으로 장르가 확대되는 추세로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에도 큰 변화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개선 연구: 작품 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2014.10.
- 서울디자인재단, 2015년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15.
- 이혜민, 성균관대학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조사보고서, 2020.
- 정철현, 안경화,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미술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08 서울시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1.
- 김정주, 도시 외부공간의 공공미술 실태분석 연구: 서울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0.
- Bengi Polat, Sebnem Gocken, Public Art and Percent for Art Strategy, Dokuz Eylul University, 2022.